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근거 신설 등 》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17호)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50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Ⅰ.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제2210417호) ····· 1

1. 제안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Ⅱ.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제2210450호) ····· 3

1. 제안경위 ·····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

Ⅲ. 검토의견 ····· 5

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계획 수립 근거 신설 등
(이만희의원안 제7조제3항 신설 및 제67조제2항 신설,
정희용의원안 제2조제5호,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 5

Ⅰ.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제221041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8.

다. 회 부 일 : 2025. 5.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극심한 피해에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외 4개 시군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에 해당함에 따

라 해당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수립 절차 단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 신설 등).

Ⅱ.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제221045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9.

다. 회 부 일 : 2025. 5.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지역의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역경제 회복과 종합적인 복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Ⅲ. 검토의견

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계획 수립 근거 신설 등 (이만희의원안 제7조제3항 신설 및 제67조제2항 신설, 정희용의원안 제2조제5호,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현 행	이만희의원안	정희용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6.·7. (생 략)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특수상황지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6.·7.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

현 행	이만희의원안	정희용의원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 및 종합적인 복구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현 행	이만희의원안	정희용의원안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까지에서----------.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생 략)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이만희의원안	정희용의원안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각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1]에 대한 지역개발계획[2] 수립 근거를 신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3]을 통하여 산불 등 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회복과 종합적인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주체 및 요건과 관련하여, 이만희의원안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이만희의원안 제7조제3항 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해, 정희용의원안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수립(정희용의원안 제7조제1항제3호)하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

---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현행법 제7조제2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이가 있음.

[표 1] 각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이만희의원안	정희용의원안
특별재난지역 '지역개발계획' 수립 근거	○ (안 제7조제3항 전단)	○ (안 제7조제1항제3호)
수립 주체 및 요건	(국토교통부장관) -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 (안 제7조제3항 전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 (안 제7조제3항 전단)	(시·도지사)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안 제7조제1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 (현행법 제7조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 (현행법 제7조제2항)
절차 간소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안 제7조제3항 후단)	×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포함	×	'낙후지역'의 정의에 특별재난지역 포함 (안 제2조제5호)
특별재난지역 '지역활성화지역' 추가 지정 근거	○ (안 제67조제2항)	× ※ 다만, '낙후지역'으로서 현행법상 요건 충족 시 지정 가능 (현행법 제67조제1항)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한 날부터

※자료: 각 개정안 조문 내용 요약

아울러, 이만희의원안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4]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이만희의원안 제7조제3항 후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이만희의원안은 특별재난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5]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이만희의원안 제67조제2항), 정희용의원안은 특별재난지역을 '낙후지역'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현행

---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역활성화지역"이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0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림업·해양업·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상 낙후지역에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지원[6]이 가능하도록 함(정희용 의원안 제2조제5호).

경북·경남·울산 산불로 인하여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통틀어 총 1조 81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가장 큰 피해[7]가 있었음.

[표 1] 경북·경남·울산 산불 지역별 피해액·복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피해액	복 구 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1,081,786	1,880,860	1,213,608	667,253	
경북 의성	209,602	406,176	247,280	158,896	특별재난지역
경북 안동	301,079	508,840	330,597	178,243	
경북 청송	250,562	431,072	274,339	156,733	
경북 영양	57,310	114,852	76,140	38,712	
경북 영덕	231,926	370,044	252,588	117,456	
경남 산청	21,664	31,316	20,061	11,255	
경남 하동	7,063	7,288	4,251	3,037	
울산 울주	2,542	8,849	7,118	1,731	
그 외 지역	38	104	74	30	
10개 시·도	-	2,319	1,160	1,160	응원헬기 비용

※자료: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관계부처 합동, 2025. 5. 2.)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④ 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71조(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3.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비용

7)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5. 5.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총 8개 시·군[8]임.

각 개정안에 따라 산불 피해가 집중된 8개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이 법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경우, 관계 기관별로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단순한 원상 복구를 넘어서 해당 지역의 중장기적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각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만희의원안 제7조제3항, 정희용의원안 제7조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시·도지사가 기존 지역개발계획의 변경[9]을 통하여

8)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 3. 27.)

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

지역 재건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낙후지역의 정의에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하려는 내용(정희용의원안 제2조제5호)에 대하여 낙후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의 성격이 상이[10]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특별재난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만희의원안 제67조제2항)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지역활성화지역은 재정여건, 인구 추이, 재난·재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74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
3. 계획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할 것
4. 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할 것
5.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
⑤ (생 략)

10) 현행법 상 낙후지역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소득·인구·재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접경지역 등 불리한 환경에 놓인 지역으로 한정하므로, 재난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소득·인구·재정 추이, 지리·사회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후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국토교통부 설명)

참고 1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개요** ※ 자료: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계획

○ (개요) 성장잠재력이 있는 **낙후·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을 종합·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수립**(10년 단위)

* (적용범위)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 (수립)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필요**, 제출된 계획에 대해 **국토정책위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승인**

○ (현황) **7개 시·도**에서 각각 **'16~'18년에 걸쳐**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절차

시군 의견수렴	→	개발계획 (안) 제출	→	관계기관 협의	→	국토정책委 심의	→	승인	→	고시
시·도지사		시·도지사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시·도지사

□ 지역개발사업

○ (개요)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역 개발계획 승인·고시	⇨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제안	⇨	국토정책위·지역개발위 심의	⇨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	⇨	사업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신청	⇨	국토정책위·지역개발위 심의	⇨	실시계획 승인·고시
(국토부)		(시·도지사, 국토부)		(지역개발법 제11조)		(시·도지사, 국토부)		(시·도지사, 국토부)		(시행자→시·도지사)		(지역개발법 제23조)		(시·도지사)

○ (지원)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국비지원, 인허가 의제, 부담금감면** 등이 지원됨

○ (사업유형)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건설, 문화관광, 산업단지조성, 정주환경개선** 사업 등

참고 2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예시

※ 자료: 국토교통부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SOC	ㅇㅇ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도로확포장
SOC	ㅇㅇ단지 연계도로	도로개설
SOC	ㅇㅇ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주차장, 근린공원
SOC	ㅇㅇ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	도로확포장, 교량 확장
SOC	ㅇㅇ섬 ㅇㅇ교 가설공사	해상교량 건설, 접속도로 건설
SOC 문화시설	`ㅇㅇ 거점특화 단지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 조성, 모빌리티 복합문화 커뮤니티시설 조성
SOC, 문화시설	ㅇㅇ호 자전거 연계거점	·수변자전거길, 친수데크, 해먹쉼터, 조망벤치, 스카이사이클 등
관광시설	ㅇㅇ산 녹색체험 지구 조성	·캠핑사이트 ㅇ면, 카라반 사이트 ㅇ면, 편의시설 ㅇ동 등
관광시설	ㅇㅇ문화권 역사 관광루트 구축	·전망대 건립 및 홍보관 설치
관광시설	ㅇㅇ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해상탐방로, 경관조명 및 해양안전시설, 관찰데크 등
문화시설	동서화합 ㅇㅇㅇㅇ터 조성	미디어 아트센터 구축
문화시설	관광거점 공간 조성사업	ㅇㅇ전시체험관 신축